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조건
- 정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(1단계) -

□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개요

사업명칭	정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(1단계)
사업위치	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제기리, 귀래리, 덕절리, 음양리, 금복리, 망월리, 수면리, 내리
사업규모	・ 오수관(D80~300mm) L=39.4㎞ ・ 배수설비 1,264개소
사업시행자	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
사업기간	**인가일로부터 ~ 2029.12.30.까지**

□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조건

■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부서(기관)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.

■ 동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개별법에 의한 인·허가, 신고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공사시 『건설산업기본법』 제1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, 같은법 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관리,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[시행령 별표5 공사 예정 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사 배치기준]를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.

■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6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준공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관계부서(기관)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. 끝.

붙임 관계부서 협의의견에 조치계획서

관련부서(기관)	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 (반영여부등)
건설과 (건설과-13183) (2026. 6. 16.)	행정재산관리	■ 국(공)유지에 배수관로 연결 계획으로 공사 전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함. 다만, 인접부지 통행 및 배수처리 등에 저촉되지 않고, 영구시설물(건축물, 교량 등)이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시기 바라며, 현장 확인에 따른 주변 여건, 민원 발생 등 담당자가 기반 제반사항 검토 후 사용허가 불가 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함.	■ 하수관로 공사에 저촉되는 국(공)유지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허가를 득하겠음.	반 영
	하천시설	■ 소하천 점용은 해당 구청에 신청하시기 바람.(음양천) 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저촉시 담당자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	■ 사업 착공 전 점용허가를 득하겠음. 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저촉시 별도 협의하겠음.	반 영
	하천운영	■ 국가하천 구역 내 점용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시기 바라며, ■ 지방하천, 소하천 내 점용은 관할 구청에 신청 바랍니다.	■ 이행하겠음.	반 영
	기반조성	■ 사업구역내 농업생산기반시설(농로, 용배수로, 관정 수문 등)이 저촉되거나 편입될 경우 농경지 통행 및 농업용수 이용과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, 대체시설 등 설치할 경우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	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득함.	반 영
도시개발과 (도시개발과-27810) (2026. 10. 26.)		■ 「농지법」 제3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[별표2] 제1호나목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·폐수종말처리시설·분뇨처리시설·폐기물처리시설·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)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50% 감면되는 시설입니다. 아울러, 「농지법」 제38조제4항 규정에 따라 개별법에 따른 인가·허가·승인전까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(보완 등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■ 사업 시행은 농지전용협의 요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,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협의받은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등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32조제5항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협의를 받아야 합니다.	■ 납부 완료 ■ 이행하겠음.	반 영

관련부서(기관)	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 (반영여부등)
		■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(준공 등)로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거나,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화성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승인을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며,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「농지법」 제59조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 ■ 공사 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 인근 농지 및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발생을 해소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, 피해 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합니다. ■ 사업 부지 내 농지에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을 때는 농작물을 수확한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, 공사 시 발생되는 토석을 농경지에 매립해서는 안됩니다. ■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(구거, 농로 등)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 전 미리 시설관리자와 협의하고, 차단되는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,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수자원-3735(2026. 10. 6.) 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합니다. ■ 기타 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 의한 인·허가, 신고, 협의, 동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, 인가·허가·승인 결과 등을 화성시 농지전용팀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. ■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수 후 사업시행하여야 하며, 국(공)유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소관청(부서)과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. ■ 절개사면 발생 시 자연친화적으로 녹화 피복하고, 토사 유출이 없도록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. ■ 인근 소규모 자연배수로를 차단하거나 유수를 변경하지 않고 공사하여야 합니다. ■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(일조, 통풍, 통작 등)과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. ■ 공사 진행 중 제반 공사 수칙 불성실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주거나, 제외지 농지를 훼손할 경우에는 예고 없이 협의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의법처리 하겠습니다.	■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하겠음.	

관련부서(기관)	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 (반영여부등)
		■ 「농지법」 제41조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완료·준공되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(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.)	■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하겠음.	
효행구 안전건설과 (안전건설과-12952) (2026. 6. 11.)		■조건부 동의 (공사 착공 전 도로관리심의회(굴착심의) 절차 이행 및 정식 도로점용(굴착)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할 것)		반 영
수원국유림관리소-10485 (2026. 8. 18.)		■본 협의는 요청된 국유림에 한하며, 편입필지 및 면적의 변경, 그 밖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. ■사업 고시하였을 때에는 우리 관리소로 통보하고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후 사업 시행해야 합니다. ■사업 시행 전 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. ■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·인가·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. ■본 대상지가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부서와 협의 후 사업시행하시기 바랍니다. ■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.	■이행하겠음. ■사업 착공 전 사용허가를 득하겠음. 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완료 ■ 이행하겠음. ■협의 완료 ■이행하겠음.	반 영
한국농어촌공사 화성지사		■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토지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함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람.	■10년간의 사용료 납부 완료 및 허가조건을 이행하겠음.	반 영